탄 원 서

배우자 명품가방 수수 미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귀중
사건번호 사건번호: _____ (제출 전 조회)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이 정한 요건과 당시의 구체적인 인식 여부를 세밀히 판단하여 무죄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9월 17일 기소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와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수수행위 자체와 공직자 본인의 신고 의무 위반은 법률상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떤 물품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관련 법령이 정한 의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심리해 주십시오.

또한 신고 의무의 발생 시점과 신고 상대방, 법령의 해석,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후적으로 금품 수수의 부적절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법률상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불기소 처분과 이후 기소 판단이 달라진 이유도 중요합니다. 종전 판단이 곧 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률요건에 관한 공적 판단이 왜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피고인의 책임과 고의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께서 관련 증언, 새로운 증거, 법리 변경 여부를 차분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피고인의 미신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기소의 핵심이 신고 의무 위반이라면 직무 관련성, 인식, 신고의무의 발생과 불이행 등 개별 요건을 검사의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금품 전달 당시의 정황도 공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수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사정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는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어떠한 공직자에게도 청렴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법령이 정하지 않은 책임까지 넓혀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사건의 개별 법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무죄의 판단을 내려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인식과 관여 정도에 비추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귀중